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648호
- 나. 제 안 자 : 서윤기 의원 외 42명
- 다. 제안일자 : 2020년 7월 13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7월 14일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람료 납부자가 관람을 취소할 시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 나. 관람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제5호).
- 다. ‘유모차’ 를 ‘유아차’ 로 함(안 제14조제3호).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중 차별적 용어 사용과 장애인의 문화권, 관람료 반환권의 제약 사항 등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됨.

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 20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 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 결과, 서울시 자치법규 62건(조례 57, 규칙 5) 중 96개 조문에서 시민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발굴하여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자치법규 전수조사에서는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시민참여 보장’ 등 3개 평가분야별로 9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건의 조례와 1건의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였고, 82개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총 53건)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2020. 7. 13), 이 중 34건이 의결되었음.

<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및 목록 >

인권영향평가				권고사유
평가항목	현재용어	대안용어	조문	
총계			96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9개 용어)	계		50	
	행상/노점상	→ 거리가게	5	‘거리가게’는 ‘행상/노점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2013)
	미혼	→ 비혼	1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필요
	부모	→ 보호자	1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소외계층 우범지역	취약계층 취약지역	1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저출산	→ 저출생	11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유모차	→ 유아차	4	유모차는 ‘어미 母’지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 : ‘유아’ 중심으로 표현
	자매결연	→ 상호결연 (sister city)	12	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 한국법제연구원(2015)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
	장애등급	→ 장애정도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장애인복지법>
	결손가정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1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2019)
편견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	계		5	
	학생	→ 청소년/시민	3	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
	주부	→ 여성	1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주부’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 실제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운영중
	특정계층 지칭		1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 주부, 학생 등 → 고용계약이 없는 자
입장 및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8	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마련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이용)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
반환권 제약			8	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관람권(이용권)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보장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20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1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신상의 장애」 문구 삭제 필요

※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주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의 두 가지 항목은 기본 조례가 있어 권고에서 제외됨.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의 관람 취소 시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 1명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성차별적 용어에 해당하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려는 것임.

다. 과학관 현황과 관람료 반환(안 제5조제4항)

- 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 노원구 하계동에 개관되었음.

<서울시립과학관 개요>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규 모 : 부지면적 25,875㎡ / 건축연면적 12,330㎡ / 전시면적 4,207㎡		
○ 주요시설		
층 별	면적(㎡)	주 요 시 설
지상 3층	1,528.09	상설전시실, 교육실
지상 2층	3,384.36	상설전시실, 사무실, 커뮤니티 스페이스
지상 1층	4,217.34	상설전시실, 메이커스튜디오, 강당, 교육실, 안내/매표소 등
지하 1층	3,201.0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 조직현황 : 경제정책실 내 4급 사업소(직영), 정원 18명/ 현원 18명		
○ 예산현황 : 23억 4천만원(2020년 기준)		
○ 총공사비 : 423억 4천 9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관람료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해 성인 2천원, 청소년과 어린이 1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 취소 시에는 「서울시립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이하 “관람료 징수규정”) 제8조에 따라 관람료를 전액 환불해주고 있음¹⁾.

- 안 제5조제4항은 과학관 관람 취소 시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관람료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5조(관람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 현행 조례에서는 관람료와 감면 범위를 정하고, 조례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에서는 관람권의 구분(개인·단체) 외에 규격, 내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하위 내부규정인 「관람료 징수규정」은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바 없는 관람료 취소와 환불 규정을 두고 있어 자치법규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내부규정의 위법사항을 정비하는 동시에 조례로 시민의 반환권에 대한 권리보장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임.

1) 입장권은 자동발권기(3대)를 통해 진행되며, 발권취소 및 반환의 경우에는 발생 즉시 반환처리가 진행되고 있어 반환금의 누계가 없는 상황임.

라. 관람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 1명 추가(안 제6조제1항)

- 개정안은 과학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이외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6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제6조제1항).

<서울시립과학관 연도별 이용인원과 관람료 수입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도	2017년 (5월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8월)	합계
이용인원	170,585	213,190	216,986	26,264	627,025
관람료 수입	107,197	113,530	96,436	17,532	334,695

※ 2019년 기준 관람료 면제 현황은 총 48,435명으로 성인 6,782명, 청소년 10,771명, 어린이 1,176명, 유아 29,706명이며 구체적 유형별로는 구분이 안 되고 있음.

- 과학관은 현재 안내데스크에서 장애인복지카드 확인을 통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기존 1~3급)의 보호자 1명에 대해 무료로 입장시키고 있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철도 등 운송 수단과 국공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공원 등의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에 대해서도 요금 면제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의 문화권을 확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기준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보호자 1명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과 일치시켜 중증장애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8월 기준 39만 4,975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이 14만 9,590명, 경중장애인이 24만 5,385명에 이룸.

마. 차별적 용어 변경(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유모차” 라는 용어를 “유아차” 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모차” 와 “유아차” 모두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 로 정의되고 있어 양자 간 의미의 차이는 없음.
- 다만, 유모(母)차는 여성에게만 육아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평등육아 개념에 부적합하고, 유아가 타는 차라는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아차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자→사람)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과정 중 일부 다른 조문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7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음주 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u>자</u></p> <p>2. (생 략)</p> <p>3.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u>자</u></p> <p>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자</u></p>	<p>제7조(관람의 제한) ----- ----- <u>사람</u>----- -----.</p> <p>1. ----- ----- <u>사람</u></p> <p>2. (개정안과 같음)</p> <p>3. ----- ----- <u>사람</u></p> <p>4. ----- ----- <u>사람</u></p>
<p>제8조(행위의 금지) ① (생 략)</p> <p>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u>자</u>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제8조(행위의 금지)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u>사람</u>에 -----.</p>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참고자료]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31.>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KTX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6. 고궁	100분의 100
7. 능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 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서울시립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시립과학관 관람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서울시립과학관의 관람료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관람료 등의 게시) 서울시립과학관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은 관람료, 이용료 및 입장료 등을 관람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 ① 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시스템에 따라 관람권 용지에 인쇄되는 순으로 매표한다. 단, 대규모 인원의 단체관람, 발권시스템의 미작동 등에 따라 미리 인쇄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 서울시립과학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일 개관 20분전까지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으로부터 입장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순으로 매표한다.

② 관람료는 출납공무원, 매표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③ 매표원은 매표를 마감한 후 지체 없이 매표대금과 관람권판매현황을 출납공무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 ①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전시품의 과다 동작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투입에 의한 가동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경우, 부착 완료 후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동전함의 개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시품 관리담당 관계공무원이 개함·확인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징수 요청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① 관람료 면제는 조례 제6조를 따른다.

② 관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할인대상 및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조례 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관람예정일 1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대상인원과 소속 및 사유를 통보하여 입장료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관람예정일 1일전까지 입장료 면제대상 인원과 사유를 전시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취소 및 교환 등) 서울시립과학관의 전시실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권을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인터넷으로 예매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관람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소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1. 당일 현장에서 구매한 경우, 관람 전에 훼손되지 않은 관람권을 유인매표소에 제시하고 현장에서 취소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2. 인터넷으로 예매한 경우 인터넷으로 관람일 전일 24시까지 취소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부 칙

①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